

부산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가단3008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김훈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석지혜, 정영태

변 론 종 결 2022. 12. 20.

판 결 선 고 2023.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6 지분에 관하여 2022. 1. 14.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1. 9.

27. 접수 제1241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4. 10.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50/100지분을 원고(첫째 자녀)에게, 35/100지분을 D(둘째 자녀)에게, 15/100지분을 E(셋째 자녀)에게 각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C은 2016. 5. 16. 기존 유언을 철회하고 같은 날 셋째 자녀인 F의 장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다. C은 2021. 9. 1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인 원고, D, F와 대습상속인인 E의 자녀 2명이 있었다.

라. 피고는 2021. 9.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24163호로 2021. 9. 12.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망인의 다른 상속재산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6 지분(원고의 유류분 비율)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1. 14.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1985. 7. 1.부터 1995. 1. 9.까지

합계 134,052,000원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으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원고에게 반환할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이자 지급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원인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 측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송금시기가 망인의 사망 훨씬 이전이고 약 10년에 걸쳐 송금된 점, 송금 액수도 적게는 5만 원도 있고 대부분은 100만 원 이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송금 사실만으로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를 하였고 그것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정우

별지